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연병호

#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정지숙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문 신설과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감면조항 신설
  -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북도민의 차량  
→ 「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신설  
(안 제5조제1항제7호)
  -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(안 제5조제1항제8호)

## 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「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북도민에게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고,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
타 조례 제정에 따른 조문 신설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